

#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9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2006.7월부터 재단법인 서울가톨릭 청소년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, 2019.06.30.자로 5번째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
- 나. 금년 1.22.일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, '16년~'18년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평가에서 '최우수기관'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점을 고려하여,
- 다. 2년간 운영기간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2021.06.30.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관리·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 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  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
#### ○ 재계약 사유

-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립 시설로,
- 지난 3년간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는,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법인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사업과 대안학교 운영,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이동쉼터 운영 등 청소년운영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임
-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서 청소년활동, 상담, 보호, 복지의 영역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정책사업을 시범운영하는 등 시설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
- 청소년 지역사회 성장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역기관과의 업무협약 (초·중·고 학교, 교육청, 사회복지기관,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시설)을 통하여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서의 지역네트워크의 중심에서 거점 시설로서 청소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
- 이러한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갖춘 동 법인에게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을 2년간 재계약 운영토록 하고자 함

○ 3년간 주요 추진실적

- 이용인원 ※ '17년부터 '22년 까지 경전철 공사로 인하여 수련관 이용자 감소

사업구분	이용 인원	청소년 이용인원	청소년 이용률
2016년 7월~	554,263명	477,171명	86%
2017년	799,594명	698,054명	87%
2018년	421,721명	372,573명	88%

- 지역·학교연계 실적

구분	연도	기관	프로그램
학교연계	2016	365	694
	2017	168	507
	2018	140	487
지역사회연계	2016	106	139
	2017	68	179
	2018	99	437

- 주요 우수사항

- ▶ 2016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'최우수 기관' 선정
- ▶ 2017년 여성가족부 주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'최우수등급' 선정
- ▶ 2017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'최우수기관' 선정
- ▶ 2018년 서울시 위탁종합성과평가 1위 선정
- ▶ 2018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'최우수 기관' 선정

다. 위탁 사무의 범위

-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
-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
- 학교,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
- 청소년수련관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
- 개관일자 : 1986.12.09
- 시설규모 : 부지 5,100 $m^2$ , 총면적 5,260 $m^2$  (지상 2층 2동, 부속동 공연장)
- 지원시설 : 공연장, 강의실, 청소년카페, 탁구장, 청소년전용공간 등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시민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2년 (2019.07.1 ~ 2021.06.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(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)

- 소요예산 : 3,034백만원('19년)
- 산출근거
  - 인건비 790백만원, 물건비 215백만원, 경상이전 201백만원, 자본지출 296백만원, 사업비 1,152백만원, 사업외 지출 등 기타 380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○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 
: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김은진 (☎2133-4122)